#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4598

발의연월일: 2024. 10. 7.

발 의 자: 박홍배 • 이기헌 • 강득구

김태선 • 박민규 • 정진욱

김주영 • 이수진 • 이재정

김현정 • 박 정 • 백승아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 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파견계약 체결시에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사업주에게 해당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내역을 요구할 수 있음.

하지만, 대가에 관한 해당 규정이 모호하고 현실적으로 파견근로자가 사업주에게 파견의 대가 내역을 요구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파견근로자의 차별적 처우를 비롯한 파견근로자임금의 중간착취 문제가 발생하면서 계약서에 파견수수료를 포함한근로자파견의 구체적인 대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자 함. 또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에 임금액 및 산정기준,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 파견의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로자

파견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하고자 함(안 제20조 등).

#### 법률 제 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업보고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사업보고서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 ④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 2.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 ⑤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매년 1회 홈페이지에 공개한 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

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1. 임금액 및 산정기준, 사용대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 파견수 수료 등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
-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 ④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파견사업주는 즉시 파견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서를 계약 관계가 종료한 때부터 3 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
항) (생 략)	항)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파견사업주는 근로자의 임
	금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수수료 외의 금품을
	<u>받아서는 아니된다.</u>
제18조(사업보고) (생 략)	제18조(사업보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u>&lt;신 설&gt;</u>	② 사업보고서는 매년 1회, 해
	당 연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
	에 제출하여야 한다.
<u>&lt;신 설&gt;</u>	③ 사업보고서는 전자적 방식
	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u>&lt;신 설&gt;</u>	④ 사업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근로자파견의 대가에서 근로
	<u>자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율</u>
	2. 근로자의 임금을 제외한 금
	액이 차지하는 비율
<u>&lt;신 설&gt;</u>	⑤ 고용노동부는 제1항에 따른
	정보를 매년 1회 홈페이지에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근로 제20조(계약의 내용 등) ① ----자파견계약의 당사자는 고용노 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을 서면으로 체 결하여야 한다.

1. ~ 10. (생 략)

11. 근로자파견의 대가

12. (생략)

②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
와 방법은	고용노동부령으로
<u> 정한다.</u>	

- 1. ~ 10. (현행과 같음)
- 11. 임금액 및 산정기준, 사용 대가 중 임금이 차지하는 비 율, 파견수수료 등 근로자파 견의 대가에 관한 사항
- 12. (현행과 같음)
- ② (현행과 같음)
- ③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게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서면 으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확 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을 받 아야 한다.
- ④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파견사업주는 즉 시 파견근로자에게 변경 내용 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⑤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

약서를 계약 관계가 종료한 때 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